

--주주님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 22 조 및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 년 05 월 29 일(목요일) 오전 10 시 00 분
- 2.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본사 강당
-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
|----------------------------------------------------------------------------------------------------------------------------------------------|-------------------------------------------------------------------------------------------------------------------------------------------------------------------------------------------------------|----------------------------------------------------------------------------|
| 제55조(분기배당)<br><br>① 회사는 <u>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u> | 제55조(분기배당)<br><br>① 회사는 <u>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u> <u>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u>                                                            | - 매분기말 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
| ② <u>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u>                                                                                             | ②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 - 분기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주석 신설>                                                                                                                                      | ※ <u>회사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특정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4월 ○일, 7월 ○일 및 10월 ○일 현재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금은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함.</u> | - 주주의 배당예측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신설>                                                                                                                                         | <u>부칙</u><br><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u>                                                                                                                                               | - 부칙 신설                                                                    |

제 2 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1) 전입대상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중 17,000백만 원

(자본금 1.5배 초과분 범위 내 / 자기주식처분이익 제외)

(2) 전입시기 : 2025 년 05 월 29 일 예정

(3) 전입 후 계정 처리: 기타이익잉여금으로 전입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년 5월 19일 오전 9시 ~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 31 조제 4 항 4 호에 따른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 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tkbend.co.kr](http://www.tkbend.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05 월 14 일



주식회사 태 광

대표이사 윤 원 식, 윤 준 식 (직인생략)